

〈판례평석〉

監査人の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梁 承 圭*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 파기환송

[판결요지]

(1)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청구권자가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감사보고서의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감사보고서의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투자자가 분식된 재무제표와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삼아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3)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대상회사의 분식결산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분식결산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주가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상당이라고 볼 수 있다.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教授

[사건개요]

(1) 피고 ㄷ회계법인은 1992. 4. 21 흥강관주식회사와 상장법인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의 제26기(1992. 1. 1~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흥회사는 제26기 회계연도에 있어서 대불공단 신공장 건설에 따른 자금부담과 금융비용 과다부담 등으로 당기 순손실이 1,803,000,000원, 잉여금 손실이 45,814,000,000원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여 받을 어음보관잔액증명 등 서류를 위조하여 1,919,428,954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3) ㄷ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갑은 1993. 2. 4부터 14까지 흥회사의 제26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감사준칙에 따르지 않고 감사기간에 쫓긴다는 이유만으로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이 총자산의 21.2%, 연간매출액의 38%에 해당하는 중요한 항목임에도 이를 구성하는 2,000여개 품목 중 단 36개 품목만 확인함에 그친 채 그 재고자산의 실재를 인정하여 재고자산 21,841,0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감사를 마쳤고, 또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선급금 등 항목에 대한 감사를 담당할 회계사 을도 받을 어음과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실물확인, 조회확인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받을 어음액면금 합계 20,900,000,000원의 과다계상, 허위의 외화 외상매출금 2,097,000,000원 및 외상매출금 1,044,000,000원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또 포철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6,072,000,000원임에도 그 배액인 14,001,000,000원으로 허위로 과다계상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적정의견이 표시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회사는 이 감사보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 공시하였다.

(4) 증권감독원은 1993년도 감리계획에 따라 상장회사 670여 회사 중 88개 회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1993. 7. 12부터 11. 5까지 그 감사보고서를 감리하였는데, 흥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실시 결과 위와 같은 분석결산 및 부실감사의 사실을 밝히고 외부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3. 11. 5에 흥회사의 경리담당 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ㄷ회계법인에 대한 경고, 담당회계사 갑과 을에 대하여는 1년간 직무정지처분을 건의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증권거래소에 통보하여 1993. 11. 6전장부터 11. 8전장까지 흥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5) 원고 ○은 1993. 10. 22 증권사를 통해 흥회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5,

900원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막 지난 11. 8에 또 1,000주를 주당 13,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그 후 11. 12에 그 중 100주를 주당 11,200원에 처분하였고, 회사가 부도난 후인 1995. 11. 16 나머지 1,900주를 주당 4,550원에 모두 매도하여 주가차액상당의 손해를 입어 외부감사인 ㄷ회계법인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법 1996. 2. 15. 선고 95가단85442 판결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지법 1996. 8. 28. 선고 96나15298 판결은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가 상고한 것이다.

[평 석]

I. 문제의 제기

상법상 監事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의 監査를 임무로 하는 株式會社의 法定機關이다(商 제412조).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는 언제나 監事の 감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上場法人이나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의 대규모의 기업은 內部監査 이외에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따른 監査人에 의한 會計監査를 받도록 하고 있다(證去 제194조의3 제1항, 外監 제2조). 이것은 거래규모가 크고 주식이 공개되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많은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監査人의 감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게 함으로써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다 할 수 있다(外監 제1조 참조).

監事は 언제나 성실하게 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업무의 적법성이나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監事が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を負고,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を負게 된다. 이 경우 理事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는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商 제414조). 監査人도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監査人과 그 監査에 참여한 公認會計士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を負고, 특히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監査報告書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外監 제17조).

이 사건은 上場會社의 감사인인 ㄷ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감사기준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粉食決算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財務諸表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監査報告書를 제출함으로써 주식거래가 계속 이어졌고, 株式에 투자한 投資者인 株主가 그 후 회사의 不渡로 입은 株價의 손실에 대하여 감사인을 상대로 損害賠償을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大法院判決은 그 직무를 게을리한 監査人の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뜻이 있는 判例라 할 것이다.

이 判決의 논점은 法理的으로 크게 논란이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판결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적당히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그릇된 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주가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법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에게는 철저한 책임을 묻는 풍토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監査人の 제3자에 대한 責任을 중심으로 이 판결의 입장을 살펴 보기로 한다.

II. 監査人の 任務와 責任

1. 監査人の 뜻과 選任

監査人は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株式會社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 등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상장회사 등의 財務諸表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독립된 外部監査機關이다(外監 제2조, 證去 제194조의3 참조). 이와 같이 감사인은 대규모 회사 또는 上場會社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자이므로 회계전문가로 그 자격이 제한된다. 즉 監査人は 5인 이상의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설립된 會計法人, 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監査班으로 한정하고 있다(外監 제3조 제1항).

회사는 매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監査人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監事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外監 제4조). 다만 회사가 회계법인인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거나 감사반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인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外監 제3조 제3항). 그리고 상장법인은 회사의 요청 등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위원회의 변경선임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外監 제4조의2, 제4조의3 참조).

2. 監査人の 任務

감사인은 회사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委任關係에 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民 제681조). 監査人은 회사가 그 사업연도의 財務諸表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外監 제7조)하면 이를 감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上場法人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證去 제2조 13항)으로서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회계처리의 공정성 내지는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監査人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外監 제6조 제1항). 즉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의 장부와 회계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정보의 제공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¹⁾

이와 같이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되는 監査基準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감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다(外監 제5조). 그러므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그 감사기준에 따라 그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감사하여 監査報告書를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會社, 증권관리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外監 제8조, 外監施 제7조).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의 숫자상의 정확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그것이 定款에 기재된 특별한 사항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느냐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지고 있다.⁽²⁾

監査人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는 이른바 秘密嚴守義務를 진다(外監 제9조). 또한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理事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命이나 定款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株主總會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外監 제10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報告義務 또는 通報義務는 주주총회 또는 監事에 대한 것이지 제3자에게 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監査人인 공인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대상회사의

(1) Ray Hodgin, *Professional Liability: Law and Insurance*, LLP, 1996, p. 251.

(2) Digby Charles Jess, *A Guide to the Insuranc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isks*, 1982, p. 23.

고객(client's customers)에 대한 公開義務(duty of disclosure)를 지는 것은 아니다. 대상회사의 회계상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감사인은 그 회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경고(blow the whistle)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다음의 감사보고서에 그 정보를 기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³⁾ 다시 말하면 監査人は 감사의 결과 會社の 財政上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監査報告書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3. 監査人の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1) 責任의 요건과 성질: 監査人は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라 理事가 제출한 財務諸表를 감사하는 외부감사기관이므로 직접 제3자와 거래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外監 제17조). 가령 회사가 분식이익을 계상하여 위법배당을 하고, 그것이 감사인이 그 회계감사를 적정하게 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 의무위반으로 직접 생긴 위법배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그 예이다.⁽⁴⁾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外監 제17조 제2항).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동조 제3항, 제1항 후단), 또 理事 또는 監事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동조 제4항).

商法은 監事の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건으로서 理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서 任務를 懈怠한 때”(商 제414조 제2항)로 하고 있으나, 外監法은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의 손해”를 그 책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責任의 성질이 무엇이나는 다름이 있을 수 있다.⁽⁵⁾ 그러나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한 不法行爲責任이라고 풀이한다. 왜냐하면

(3) 79A Corpus Juris Secundum, West Publishing Co., 1995, p. 215.

(4) Hodgin, *op. cit.*, p. 275.

(5) 理事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法定責任說과 不法行爲責任說로 갈려 있으나 앞의 설이 옳다고 본다(梁承圭, 제3판 商法事例研究, 1994, 160면 참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감사인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그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이다.

(2) 立證責任: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기준에 따라 회계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의무위반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풀이한다. 外監法 제17조 제5항은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會計法人이 감사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회사가 거래은행과 공모하여 어음계정 등을 위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거래은행에 잔고증명 등을 확인하였으나, 은행이 사실과 같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감사인에게 돌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것은 회계감사라는 사정에서 실제상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이다.⁽⁶⁾

(3) 제3자의 범위와 損害賠償額: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는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회사에 투자한 주주와 채권자 등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회사가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粉食利益 등을 계상함으로써 회사의 財務構造가 튼튼한 것으로 가장한 경우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하다고 기재함으로써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證券去來法 제197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外監法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뜻을 뚜렷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주주가 아닌 기존의 주주는 그 감사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株價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⁷⁾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자가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보고서의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된 사항이 중요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중요성(ma-

(6) Hodgin, *op. cit.*, p. 275.

(7) 理事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商 제401조)에서 株主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이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참조.

teriality)은 보통의 신중한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기 전에 합리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또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사항의 뜻으로 새길 수 있다.⁽⁸⁾ 株式에 투자한 경우 그 損害賠償額은 그 주식취득자가 실제로 지급한 주식가격에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證去 제197조 제2항, 제15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그 주식취득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입은 損害額만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사인이 그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證去 제15조 제2항).

(4) 責任의 消滅: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감사인의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外監 제17조 제7항).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民 제766조)에 비하여 단기인데 그 이유는 증권거래에서 오는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이 가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까지 그 責任의 소멸을 단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감사보고서의 부실을 안 날이 언제이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사실문제에 속하나, 그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 그러므로 증권감독원 등 감독기관에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가 있었음을 지적하여 공고하거나 주식거래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자도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III. 判決에 대한 批判

이 사건은 상장법인인 흥회사가 18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과 458억원 남짓의 잉여금손실이 났으나 금융비용조달 등을 목적으로 분식결산을 함으로써 1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監査人 永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등이 감사기준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분식결산을 밝히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달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데서 연유

(8) 79A C. J. S. *op. cit.*, p. 110.

(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참조(공보 962호, 490면).

한 것이다.

회계감사는 분식결산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기업회계가 정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 기업회계는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및 그 기업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를 포함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측정·보고하는 것이다.⁽¹⁰⁾ 특히 法이 監事에 의한 内部監査 이외에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에 의한 外部監査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영자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계산서류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가 시간이 쫓긴다는 이유로 채고자산의 조사 등을 소홀히 하고, 또한 각종의 계산서류의 부속명세서 등의 확인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직무상의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엄격하게 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ㅎ회사가 분식결산을 위하여 자산의 과대평가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밝혀내지 못한 감사인의 책임을 전제로 그 책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나 주식투자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株價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판시한 것은 옳다고 보아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대법원판결이 주식투자자가 그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삼았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심이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이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는 일은 그리 흔한 일로 여길 수는 없으나, 그 감사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면 부실기업의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 등의 조치가 내려져 거품이 빠진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는 의문이 있으나, 감사인으로서 그 직무를 게을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10) 河本一郎·大武泰南, 證券取引法讀本, 有斐閣, 1993, 55면.